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10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김도읍 • 권성동 • 박대출

구자근・조승환・곽규택

주진우 • 이성권 • 정희용

조지연 • 박형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 · 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 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법률 제 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유아교육법」의 개정)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제2조(「평생교육법」의 개정)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3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 제8조의2(결격사유)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 |
|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 | |
| 다. | |
|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
| 는 피한정후견인 | |
| 2. ~ 9. (생 략) | 2. ~ 9. (현행과 같음)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 | |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② | | |
|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 | | |
| 설치자가 될 수 없다. |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 1. 피성년후견인 | | |
| <u>견인</u> | | | |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 제9조(결격사유 등) ①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 | |
| 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
|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u>1. 피성년후견인</u> |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